

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75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, 2020년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'19년 기금 결산결과 예치금 수입 증가에 따라 재무활동비를 조정,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,

나. 코로나19 위기상황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및 만기연장 확대,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융자, 불안정고용노동자 소액융자 계획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추가 변경하였음.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수입 계획						지출 계획					
구분	당초 (A)	변경			증 감 (B-A)	구분	당초 (A)	변경			증 감 (B-A)
		1차	2차	3차 (B)				1차	2차	3차 (B)	
계	25,593	29,819	26,819	29,819	4,226	계	25,593	29,819	26,819	29,819	4,226
전입금	5,800	5,800	5,800	8,800	3,000	사회적경제기업 용자	11,500	11,500	15,500	15,500	4,000
						소셜하우징 용자	3,500	3,500	3,500	3,500	-
용자 이금자	374	374	374	374	-	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용자	-	-	1,000	1,000	1,000
용자 회금수	11,427	11,427	8,427	8,427	△3,000	임팩트투자 출자금	1,000	1,000	1,000	1,000	-
						민간자산 클러스터	5,000	5,000	-	-	△5,000
이수 자입	140	140	140	140	-	불안정노동자 소액용자	-	-	-	3,000	3,000
기수 타입	100	100	100	100	-	비용자성 비사업	250	992	1,112	1,272	1,022
						기관 리금비	200	200	200	200	-
예치 회금수	7,752	11,978	11,978	11,978	4,226	예치 지금출	4,143	7,627	4,507	4,347	204

○ 수입계획 : 25,593백만원 → 29,819백만원 (증 4,226백만원)

〈증액〉

- 불안정고용노동자 소액용자 전입금 : 5,800백만원 → 8,800백만원 (증3,000백만원)
- '19년 결산결과 반영 예치금 회수 : 7,752백만원 → 11,978백만원 (증 4,226백만원)

〈감액〉

- 용자금 회수 감소 : 11,427백만원 → 8,427백만원 (감 3,000백만원)

○ 지출계획 : 25,593백만원 → 29,819백만원 (증4,226백만원)

〈증 액〉

- 코로나19 특별용자 : 10,000백만원 → 14,000백만원(증 4,000백만원)
- 사회적경제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종사자 소액용자(신규) : 1,000백만원
- 불안정고용노동자 소액용자(신규) : 3,000백만원
- 비용자사업비 : 250백만원 → 1,272백만원(증 1,022백만원)
- 예치금 : 4,143백만원 → 4,347백만원(증 204백만원)

〈감 액〉

- 민간자산클러스터 지출계획 변경 : 5,000백만원 → 0백만원(감 5,000백만원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조치완료 ('20년 제1차~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정책팀 김나영 (☎ 2133-5477)